판례로 본 건설분쟁 사례 ⑤

자료제공 /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건설경제 신문사 刊)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한 행위

쟁점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가?
판단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한정된다.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 자신으로 신뢰하도록 오해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명의차용자 자신의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사례

乙회사는 도급인으로부터 A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실제로는 공사 대금의 10%를 명의대여료(이른바 부금)로 받기로 하고 丙에게 乙회사의 이사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A상가신축공사는 丙이 乙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丙은 乙회사의 승낙하에 공사현장에 "乙회사 A상가신축공사 현장사무실" 간판을 내걸고 乙회사의 공사본부장 행세를 하면서 丁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했다. 丁은 공사자금을 차용해 오라는 丙의 지시를 받고 甲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甲은 丁이 乙회사의 현장소장인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줬다. 甲은 "차용인 : 乙회사 A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 丁"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까지 받았다.

甲은 丁에게 빌려준 돈을 乙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판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88다카26390 판결)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쟁점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단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에게까지 미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라는 법률행위에 관한 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는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 책임은 직접 피용자의 행위는 물론이고 그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게 된다.

판례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업에 관하여 자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그 사업을 대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본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보더라도 피고는 소외 '갑'에게 피고 자기의 분뇨수거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락한 바에는 '갑'이나 그 피용자의 분뇨수거사업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자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은 위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대법원 63다638 판결)

건설업 명의대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쟁점	어떤 건설업자가 자신이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한다면 건산법 제21조 소정의 명의대여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것인가?
판단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받아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다.

1. 건산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건산법은 명의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건산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란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은 건산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도5541 판결)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⑳

자료제공 /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

업무제휴 후 도급계약을 맺을 시 하도급 형태로만 가능한지 여부

Q 전략적업무제휴약정을 맺을 후 A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A사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별도의 컨소시엄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A 발주자와의 계약이 A사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사와 새로이 컨소시움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고 하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미수금으로 인한 공사중단시 기성공사금 회수 방안은

Q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수금이 많아 공사를 중단한 경우 기성공사금의 회수방안은?

A A사의 계열사인 B사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허용되기 어렵고, 다만 A사가 B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B사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품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해야 할 내용

Q 주철강관을 구입하여 현장에 매설하였는데, 수압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였다.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A 먼저, 구입한 강관이 이 사건 현장에 매설되었다는 점(공사현장의 현물 확인이 어렵다면 거래내역서와 시공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을 입증하고, 다음으로 그 하자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품의 하자가 입증되면 이를 보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일용 손해배상액이 될 것이다.

워크아웃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재개 발생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Q 원도급자인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사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A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A 하도급계약서에 A가 대금지급보증을 안 한 경우는 계약해제사유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종전 하도급계약 당시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가 공사 기간을 변경하는 약정을 할 당시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밖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서에 금융기관의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어음이 금융기관의 할인이 가능하게 된다거나, 어음할인이 되었으나 A사가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설비의 자금으로 이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사대금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Q 학교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수급자로부터 공시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의 대응방안은?

A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기성의 지급여부, 공사의 지연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 후 공사대금의 직불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불지급신청을 할해야 한다.

타요인으로 인한 간접원인으로 시설물하자 발생시 책임 여부

Q 호텔 설비시설의 개보수공사를 하던 중 기존 시설물에 간접 접촉으로 기존에 있던 스프링클러 배관 레듀사 연결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입주업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A 기존 시설물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엔지니어링으로서도 원인제공을 하기는 하였으나, 종래 시공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배관 레듀사 연결부위가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아니하여 또 다른 원인제공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시공사인 ◇◇엔지니어링과 발주자인 호텔의 공동책임이 될 것이다.

입주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손해사전인 등을 통해 그 손해를 객관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입주업체는 시설물 소유 관리자인 호텔에 대하여, 호텔은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순차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타명의 도급거래

Q 전략적업무제휴약정을 맺을 후 A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A사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별도의 컨소시엄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A 발주자와의 계약이 A사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사와 새로이 컨소시움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고 하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관련 상담사례 ⑥

자료제공 / 노동부

계약직 근로계약 반복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여부

Q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A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 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상 질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Q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A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이때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Q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A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 집행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

Q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은

A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Q 고용보험사업장을 이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A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노동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은 실직 후(6개월 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사항은 www.HRD.go.kr의 〈직업훈련〉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Q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A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인사질서 ·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 전에 근무하였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선급금 예외적 정산약정시, 하도급 대금의 직불이 더 우선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하도급자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미정산 선급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것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사건 2007다31211 공사대금, 판결선고 2010.5.13]했다. [편집자주]

▣ 사건경위

청주시는 원도급자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청주시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진행 도중 공사를 포기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A사가 지급받지 못한 기성대금과 미정산 선급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청주시에 납부했다. 그러나 하도급자 A사는 미정산 선급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것보다 하도급대금 직불의무가 우선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재판부는 "하도급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발주자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됐음을 이유로 하도급자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갖는 하도급자로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선급금 예외적 정산약정시 하도대 직불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하도급대금을 직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대법원 1999.12.7.선고 99다55519판결 등 참조),이 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26.선고 2002다68362판결, 대법원 2004.6.10.선고 2003다69713판결 참조).

한편,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3.31.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중략…]

앞서 본 법리와 구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소외 1주식회사에 지급한 선급금 중 미정산 잔액 415,250,000원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피고의 소외 1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되게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도급인인 피고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도입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온 거래계의 관행, 위 조항이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해서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되고,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위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주식회사는 부도 이후 2005.3.8.피고에게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포기의사를 제출함으로써 잔여공사에 대한 소외 1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이 '0'으로 변경되고 그 대신 소외 4가 46.54%의 지분으로 소외 1주식회사 몫의 잔여공사를 전부 수행하는 내용의 지분조정이 있었고 이를 피고가 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그에 따라 피고와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소외 4가 잔여공사를 수행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 속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항의 도입 취지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

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해석과 연관지어 볼 때, 위 제44조 제5항 단서는 그 조항의 위치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출자비율 조정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계약관계에서 남아 있을 뿐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관련법 해석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37조 제3항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는 「①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 경우에는 해당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먼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남는 선급금이 있어야 상계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월간 '설비건설' 2010년 7월호 77p 〈판결사례〉에 게재되었던 바, 회원사로부터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호에 추가하여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카스트라토와 오페라

중세 예배극에서 시작된 오페라는 음악극으로 모든 대사가 노래로 만들어진다. 초기의 오페라는 이탈리아 궁정의 여흥으로 발달되었으며 베네치아의 오페라가 대중의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때의 오페라는 여성이 출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 역은 변성기 이전에 고환을 제거한 남성 소프라노, 카스트라토가 출연했다. 18세기에 귀부인들은 카스트라토의 초상을 새긴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칼로브로스치 파리넬리는 비범한 노래 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가대에서 남성 소프라노로 노래했었다. 1734년 파리넬리가 처음 런던에서 노래를 했을 때 청중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열광했다. 그는 매우 유명해졌으며 스페인의 왕궁에까지 그 명성이 퍼져 나갔다. 그 때 필립 4세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므로 파리넬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했다. 그 뒤 10년동안 파리넬리는 매일 밤 필립 4세를 위해 노래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파리넬리는 보통 사람보다 7~8도 이상 높은 음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으며 우렁찼다고 한다. 또한 한 가지 음을 6분 동안 낼 수 있었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간 오페라는 큰 인기를 얻었는데, 오페라 극장은 귀빈석이 2층 이상의 발코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망원경을 들고 오페라를 관람했다. 화가들은 오페라 관람을 그림으로 그렸고, 초기의 사진가들은 오페라를 감상하는 관람자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19세기 이탈리아는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의 3대 거성으로 인해 오페라의 본고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